

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

신청인	이름(회사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	
	주소		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	
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	명칭			
	주요내용			
법령정비 요청내용	정비요청 법령			
	신청인의 의견			
법령정비 판단결과	[]	1. 「 」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	[]	1-1.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.
	[]		[]	1-2.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	[]	2. 「 」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 ※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
그 밖의 안내사항	※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.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(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)의 만료일 ※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에 따르며, 임시허가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			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직인